

부천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심사 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출자 : 2007년 12월 5일 김승동의원 제출

나. 회부일자 : 2007년 12월 5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40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2007. 12. 11) 상정
- 제140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2007. 12. 11) 원안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기획재정위원회 김승동 의원)

가. 제안이유

- 시에서 추진하는 모든 시책·제도 및 사업은 시행 적정시기에 최대한의 성과를 거두어야 하나 장기적으로 지속되면 실효성이 떨어지고 행정력과 예산의 낭비가 초래될 수밖에 없지만 오랜 관료사회의 타성으로 인하여 폐기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임.
- 또한 아무리 좋은 착안이나 시책이라 하더라도 비용 대 효과나 직접적 수혜자인 시민들의 체감도가 낮을 경우 과감한 폐기가 바람직하나 이 역시 결정하기가 쉽지 않음.
- 특히 예산소요가 뒤따르는 사업의 경우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나 결산검사 등에서 그 문제점이 지적되어도 이를 제도적으로 폐기 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 따라서 시가 추진하는 수많은 시책과 사업들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비용 대 효과를 분석하여 불필요한 낭비성 시책 등은 과감히 폐기하는 시책일몰제를 시행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행정력과 예산의 낭비를 줄여 새로운 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여력을 키워나가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일몰제의 적용을 받는 “시책 등”이라함은 시가 정책적으로 결정하여 집행하는 모든 예산·비예산의 시책, 제도 및 사업으로 규정함. (안 제2조)
- 시장은 매년 정기적으로 시책 등에 대하여 일몰여부를 심의 결정하여야 하며 그 시기는 전년도 사업성과를 기준으로 1월에, 전년도 결산검사 결과를 기준으로 7월에 각각 심의 결정하도록 규정함.
(안 제4조)
- 시의회 의장은 행정사무감사나 결산검사 결과에 따라 그 효과성이 현저히 떨어져 폐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이 있을 경우 시장에게 일몰을 권고 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5조)
- 일몰 여부를 판단할 대상 시책 등은 「목적은 이미 달성하였다고 판단이 되는 시책 등, 투자비용 대 성과가 미흡하여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이 되는 시책 등,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 시책 등, 대다수의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불편만 증대된다고 판단이 되는 시책 등, 기타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추진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으로 규정함.
(안 제5조)
- 일몰을 심의결정 하기 위하여 “부천시시책일몰제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며, 위원회의 심의과정에 외부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 제8조)
- 시장은 일몰사업으로 선정된 시책 등이 계속 집행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의장의 요청이 있을시 시의회에 관련내용을 보고하도록 함.(안 제9조)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 내용	답변 내용
○ 해당없음.	○ 해당없음.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없음

나. 반대토론

없음

5. 심사결과

원안의결

6. 소수의견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부천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제199호
의결 년월일	2007. 12. 21 (제140회)

발의년월일 : 2007. 12. 5.

발 의 자 : 김승동의원등14인

1. 제안이유

- 시에서 추진하는 모든 시책·제도 및 사업은 시행 적정시기에 최대한의 성과를 거두어야 하나 장기적으로 지속되면 실효성이 떨어지고 행정력과 예산의 낭비가 초래될 수밖에 없지만 오랜 관료사회의 타성으로 인하여 폐기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임.
- 또한 아무리 좋은 착안이나 시책이라 하더라도 비용 대 효과나 직접적 수혜자인 시민들의 체감도가 낮을 경우 과감한 폐기가 바람직하나 이 역시 결정하기가 쉽지 않음.
- 특히 예산소요가 뒤따르는 사업의 경우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나 결산검사 등에서 그 문제점이 지적되어도 이를 제도적으로 폐기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 따라서 시가 추진하는 수많은 시책과 사업들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비용 대 효과를 분석하여 불필요한 낭비성 시책 등은 과감히 폐기하는 시책일몰제를 시행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행정력과 예산의 낭비를 줄여 새로운 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여력을 키워나가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일몰제의 적용을 받는 “시책 등”이라함은 시가 정책적으로 결정하여 집행하는 모든 예산·비예산의 시책, 제도 및 사업으로 규정함. (안 제2조)
- 나. 시장은 매년 정기적으로 시책 등에 대하여 일몰여부를 심의 결정하여야 하며 그 시기는 전년도 사업성과를 기준으로 1월에, 전년도 결산검사 결과를 기준으로 7월에 각각 심의 결정하도록 규정함. (안 제4조)
- 다. 시의회 의장은 행정사무감사나 결산검사 결과에 따라 그 효과성이 현저히 떨어져 폐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이 있을 경우 시장에게 일몰을 권고 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5조)
- 라. 일몰여부를 판단할 대상 시책 등은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판단이 되는 시책 등, 투자비용 대 성과가 미흡하여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이 되는 시책 등,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 시책 등, 대다수의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불편만 증대된다고 판단이 되는 시책 등, 기타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추진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으로 규정함. (안 제5조)
- 마. 일몰을 심의결정 하기 위하여 “부천시일몰시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며, 위원회의 심의과정에 외부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 제8조)
- 바. 시장은 일몰사업으로 선정된 시책 등이 계속 집행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의장의 요청이 있을시 시의회에 관련내용을 보고하도록 함.(안 제9조)

부천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낭비요인을 없애므로써 시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책 등”이란 시가 정책적으로 결정하여 집행하는 모든 예산·비예산의 시책, 제도 및 사업을 말한다.
2. “일몰”이란 이 조례에서 심의 결정하는 시책 등의 폐지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4조에 따른 시본청 및 소속기관, 하부행정기관의 시책 등에 적용한다.

제4조(일몰의 심의·결정) ① 시장은 매년 정기적으로 시책 등에 대하여 일몰여부를 심의·결정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일몰여부의 심의·결정 시기는 다음과 같다.

1. 전년도 사업성과를 바탕으로 한 심의·결정 : 1월
2. 전년도 결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심의·결정 : 7월

제5조(일몰의 권고) 시의회 의장은 매년 6월과 12월에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몰대상 사업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시장에게 통보하여 일몰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할 대상 사업의 선정은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한다.

제6조(일몰대상 시책 등) 위 제4조의 일몰여부를 심의 결정하는 대상 시책 등은 다음과 같다.

1.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판단 되는 시책 등
2. 투자비용 대 성과가 미흡하여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

고 판단 되는 시책 등

3.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 되는 시책 등
4. 대다수의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불편만 증대된다고 판단 되는 시책 등
5. 기타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추진 효과가 없다고 판단 되는 시책 등

제7조(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위 제5조 각호의 사업 등에 대하여 일몰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부천시시책일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원은 실·국·사업소 주무과장 및 구 총무과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제4조제2항에 따라 연 2회 정례적으로 개최하되, 제적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처리) 시본청 및 소속기관, 하부행정기관의 해당부서에 국한되고 사안이 경미한 시책 등은 관련 지침에 따라 부서가 결정하여 처리하고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9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회는 대상사업의 심의 과정에 필요한 때에는 외부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토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관리감독 등) 시장은 일몰 대상으로 결정된 시책 등이 계속 집행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시의회 의장의 요청이 있을시 관련 내용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